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6일

발의자 : 김경이, 김육영, 오중균, 임현주,
임태근, 정병기, 정윤주, 고영옥,
소형준, 이용진, 경수현, 이인순,
진선아, 권영애, 정해숙, 이호건

1. 제안이유

본 조례의 상위법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환경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법령 용어 정비
- 다.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공무원 환경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마.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1조)

바. 홍보 및 포상과 관련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환경과

라. 입법예고 : 2023. 9. 26. ~ 10.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12조의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과 제7조의 사항의 일부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 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한다.